

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(2007.06.30)
및
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(1976)에 관한

상설중재재판소
사건 번호 2018-55

1. 메이슨 캐피탈 엘.피. (MASON CAPITAL L.P.)
2. 메이슨 매니지먼트 엘엘씨 (MASON MANAGEMENT LLC)
(이하 '청구인')

대한민국
(이하 '피청구국')
(‘청구인’ 및 ‘피청구국’의 집합은 ‘당사자들’로 칭한다.)

절차 명령 제 3 호

중재판정부
Professor Dr. Klaus Sachs (의장중재인)
The Rt. Hon. Dame Elizabeth Gloster
Professor Pierre Mayer

사무국
상설중재재판소

2019 년 8 월 30 일

2019 년 3 월 5 일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이 2019 년 1 월 25 일자 본안 전 이의제기 서면을 통해 제기한 본안 전 이의제기에 관한 결정 관련 절차일정표를 설정하는 절차 명령 제 2 호를 발령한 바,

2019 년 8 월 29 일자 전자우편으로 청구인이 중재재판부에 본안 전 이의제기 관련 청구인의 답변 제출 기한 변동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 바,

- 서면입장 제출 기한은 2019 년 9 월 11 일로 연장한다;
- 절차 명령 1 호에 부합한 인쇄 사본, 부속 문서 (증거물 및 법적권한 포함) 및 번역본 제출 기한도 이제 준하여 연장한다;
- 증인진술서 및 전문가 보고서 (부속문서 불 포함) 제출 기한은 2019 년 9 월 6 일(금)로 유지한다.

동일 전자우편 상으로 중재재판부는 본안 전 이의제기 관련 청구인의 답변 제출 기한 변동 사항을 인지하고,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피청구국에 청구인의 전자우편 내용 관련 합의 여부를 요청한 바,

2019 년 8 월 30 일자 전자우편으로 피청구국은 상기를 확인한 바,

중재판정부는 다음 사항을 명한다:

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, 절차일정표를 하기와 같이 수정한다:

본안 전 이의제기 관련 청구인의 반대서면	2019 년 4 월 19 일(금)
본안 전 이의제기 관련 피청구국의 답변	2019 년 6 월 28 일(금)
본안 전 이의제기 관련 청구인의 답변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서 및 전문가 보고서 (부속문서 불 포함)	2019 년 9 월 6 일(금)
본안 전 이의제기 관련 청구인의 답변	2019 년 9 월 11 일(수)
본안 전 이의제기 관련 공청회 (뉴욕)	2019 년 10 월 2 일(수) - 4 일(금)

중재지: 싱가포르

(서명)

Professor Dr. Klaus Sachs

(의장중재인)

중재판정부 대표